

부처공동 보도자료	보도시점	자료배포일	매수
	2011. 3. 16(수) 조간부터	2011.3.14	15
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팀	김정환 팀장 / 이장원 사무관(509-7909)		
농림수산식품부 녹색미래전략과	강형석 과장 / 장현경 사무관(500-2441)		
지식경제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팀	이상준 팀장 / 김중주 서기관(2110-5422)		
국토해양부 녹색미래전략담당관실	김창균 과장 / 김시만 사무관(2110-6004)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 확정·고시

- ◇ 기후변화협약 비부속서(Non-Annex) 국가로는 최초로 개별 기업의 온실가스·에너지 산정·보고·검증(MRV) 체계 확립
- ◇ MRV 포함, 관리업체 지정, 감축목표 설정, 검증기관 관리 등 목표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
- ◇ 100여회 가까운 부처, 기업, 전문가 협의 등의 협업(協業)과정을 거쳐 지침 확정(2011.3.16)
- ◇ 468개 관리업체, 명세서 제출, 목표 설정, 이행계획 제출 등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본격 착수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총괄기관을 맡고 있는 환경부와 부문별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3월 16일자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을 확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에 고시된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중 하나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 관리업체 지정, 목표 설정, 산정·보고·검증, 검증기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 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조직경계 설정방법, 관리업체의 지정절차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② 목표의 협의·설정

- 기준연도 배출량 산정방법, 목표 설정방법(과거실적기반, 벤치마크기반), 목표 이행 평가방법, 목표설정협의체 구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 고정연소 등 33개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방법론, 모니터링 계획 작성, 명세서 작성방법 및 품질관리·품질보증(QC/QA) 등에 관한 사항

④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

- 관리업체가 작성한 명세서 등을 검증하는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규정

⑤ 이행실적·명세서의 작성 및 확인

- 관리업체의 이행실적보고서·명세서 작성방법, 정부의 확인절차 등 규정

⑥ 조기감축실적 등의 인정

- 제도 시행이전에 자발적으로 감축한 실적에 대한 인정절차 및 방법
- 조직경계 밖에서 감축한 실적인 외부감축실적 인정근거 규정

⑦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 검증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검증심사원의 교육·등록에 관한 사항

⑧ 기타 : 명세서의 공개절차, 관장기관 소관사무 점검·평가 등

□ 환경부는 이번 목표관리 운영지침을 제정하면서 무엇보다도 **국제 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였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EU, 미국, 호주 등의 관련법령과 함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SO(국제표준화기구)의 해당규정을 면밀히 분석·반영한 바, 향후 도입될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는 물론 국제 탄소 시장에서의 참여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이와 함께, 제도 운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였는바, 먼저 3천CO₂톤 미만의 **소량 배출사업장**이나 10CO₂톤 미만의 **극소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보고절차를 경감**하였다.

○ 또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기업의 신·증설 계획 등이 감안**될 수 있도록 하였고, 목표관리 제도 시행 전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노력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대·중소기업 협력** 등 관리업체가 조직경계 밖에 있는 탄소 감축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관리업체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외부감축실적의 인정근거**도 함께 규정하였다.

□ 환경부 관계자는 **지침의 초안 단계**부터 총괄기관인 환경부와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물론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를 통해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 제도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목표관리 자문단 운영, 공청회, 업종별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는데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 개별 기업들의 **온실가스·에너지 의무 보고제도**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규정한 사례는 EU,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 불과하며, **비부속서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라는 점에서 금번 지침의 고시에 큰 의의가 있는 바,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지침이 고시되면서 작년 9월에 지정된 **468개 관리업체**들은 본격적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에 착수하게 된다.

○ 먼저, 관리업체들은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금년은 제도 첫해인 점을 감안, **그 제출기한을 5월말(당초 3월)**로 하여 **2개월의 추가 준비기간**을 갖게 된다.

○ 그리고 오는 9월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12월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2012년부터는 **목표 이행년도**에 들어가게 된다.

□ 정부는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총괄기관과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제도 설명회, 해설서 배포, 인벤토리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업체들의 명세서 작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 주요내용
2. 관리업체 지정현황('10.9.30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 주요내용

1.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 보고·목표관리 주체

- 法人(개인, 공공기관 포함) 또는 법인 내 사업장 기준으로 관리업체 선정
- 건물은 건축물 대장, 등기부, 에너지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

□ 관리업체의 구분

- 업체 기준을 우선 적용한 후 사업장 기준을 적용하여 지정
* 관리업체 지정기준(∼'11년말) : 업체 125천톤CO₂, 500TJ, 사업장 25천톤CO₂, 100TJ
- 공공기관 중 기준 이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시 관리업체로 지정

□ 업체 내 온실가스 소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소비량이 소량(3천tCO₂ 미만 및 15TJ 미만)일 경우 시설단위 보고·검증·이행계획·실적 제출 적용 완화

□ 관장기관별 관리업체 구분 및 이의신청

- 법인 목적, 주력산업(온실가스 배출원)등을 기준으로 관장기관 구분, 다만 불분명할 경우 총괄기관과 관장기관간에 협의를 거쳐 결정
- 업체가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관장기관에 재심사 요청

2. 목표의 협의·설정

□ 기준년도 배출량 설정

- 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된 해의 직전연도를 포함한 3년간 연평균 배출량으로 설정
* (예시) '10년 최초 지정 관리업체는 '07∼'09년도 연평균 배출량으로 기준년도 배출량 설정

□ 목표관리 대상기간

- 시행령(제30조) 규정에 따라 차년도 목표(1년단위)만 협의·설정

□ 목표설정 기준 및 방법

- 업종별 관리업체들의 총 배출허용량 내에서 관리업체별 목표 설정
- 기존시설 목표와 신·증설시설 목표를 합산하여 업체의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방식은 과거실적 기반 및 벤치마크 기반 2단계로 구분

□ 목표설정 및 관리 특례

- 국제동향, 국가 총 감축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전·철도는 BAU 대비 총량제한이 아닌 다른 방식의 목표 설정 가능

□ 목표설정협의체의 구성

- 목표설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별로 구성

□ 목표 이행의 평가

- 관리업체 목표달성 여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목표 이행을 연계하여 평가

3.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 산정·보고의 범위

- 직접배출(Scope 1), 간접배출(Scope 2)을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기타간접배출(Scope 3)은 제외
- 법인, 사업장, 배출시설(공정) 단위로 보고하며,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연간 10tCO₂ 미만의 극소배출원은 사업장 단위로만 보고

□ 산정·보고 대상 배출활동

- 고정연소, 이동연소, 탈루성 배출('13년부터 산정·보고), 산업공정배출, 폐기물 처리, 간접배출 등 총 6개 분야, 33개 세부 배출활동

□ 모니터링 계획 등의 작성

- 배출량 산정방법 등 모니터링 계획을 이행계획에 포함하여 제출
- 자료 수집, 산정방법론, 불확도 관리 등에 대한 품질관리/보증 활동 수행

□ 계산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 방법

-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배출계수별 산정등급(Tier 1~3) 관리체계 마련
* A그룹 : 연간 5만tCO₂ 미만, B그룹 : 5만tCO₂~50만tCO₂ 미만, C그룹 : 50만tCO₂ 이상
- 활동자료의 불확도는 Tier에 따라 ±7.5%, ±5.0%, ±2.5% 차등관리
- 배출계수는 Tier에 따라 IPCC 기본계수, 국가고유계수, 시설고유계수로 구분하여 적용

□ 측정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 연속측정방법(CEM)을 사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Tier 4 부여
- 연속측정방법 활용을 위한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시

4.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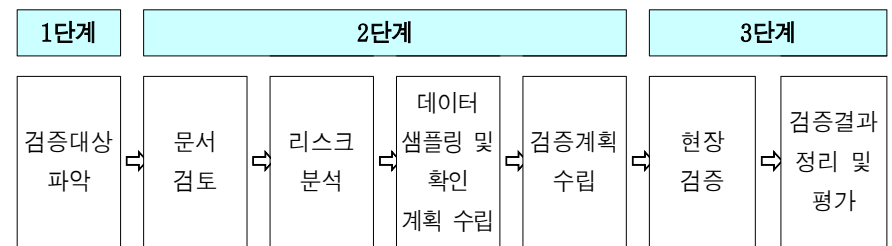
□ 검증팀의 구성 등

- 2인 이상의 검증심사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전문분야 검증심사원 1인 이상 포함
- 검증기관은 검증팀의 전문성 보완을 위하여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할 기술전문가 선임 가능

□ 내부 심의절차 규정

- 검증보고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당해 검증에 참여하지 않은 검증심사원 1인을 포함한 심의팀이 검증절차 준수여부 및 검증결과를 재검토 하는 내부 심의를 실시

□ 검증의 절차·방법



- 검증단계별로 세부방법론을 상세하게 제시

□ 검증보고서의 작성

- 검증개요, 검증내용, 발견사항, 검증결론, 내부심의 결과, 기타 사항 등의 순으로 작성

5. 이행실적·명세서 등의 작성·확인

□ 이행계획 제출

- 이행계획의 제출서식을 제시하는 한편, 소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단위의 배출량 현황 데이터만 제시하도록 규정

□ 이행실적·명세서의 작성·보고

- 이행실적·명세서의 작성 서식 및 방법론을 별지로 제시
-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실적의 경우 검증기관의 검증절차를 명확히 규정

□ 이행실적·명세서의 확인

- 이행실적·명세서의 확인시 검토하여야 되는 사항을 명시

■ (참고) 이행실적 확인사항

- 이행계획과의 연계성·정확성, MRV 기준 준수여부, 목표 이행여부, 검증결과 (개선명령시), 개선명령 이행여부(개선명령시), 기타 지침의 준수여부

■ (참고) 명세서 확인사항

- 검증결과 적합여부, 작성 요구사항에 대한 누락여부, 이행실적과의 일치여부, 기타 관련 규정의 준수사항

□ 개선명령

- 감축목표 미달성, 이행실적의 MRV기준 등 미흡시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에 개선명령 조치를 명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 규정

6. 조기감축실적 등의 인정

□ 인정 원칙 및 기준

- 국내에서 행한 감축실적, 일반적 경영활동을 넘는 **추가적 행동만 인정**
- **사업장단위와 사업단위**(Project-based) 감축실적 모두 인정
-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연간 인정상한선**을 설정

□ 인정 대상기시

- 국가 목표 설정 기준연도인 '05.1월부터 **최초 목표를 설정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감축실적을 인정

□ 인정 유형 및 인정 예외 사유

- (인정유형)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등록사업(KCER)」, 「에너지목표 관리 시범사업」, 「배출권거래 시범사업」 및 기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업
- (제외대상) 법·규제의 준수과정에서 감축한 경우, 시설폐쇄·위탁 등 조직경계를 변경한 경우, 감축실적을 **정부재정으로 보상한 경우**

* KCER 정부 구매분에 대해서는 실적의 40%를 인정

□ 연간 인정총량의 제한

- 연간 인정총량은 전체 관리업체 목표 총량의 1%로 설정

□ 조기감축실적의 인정방법

- 감축목표 이행실적의 **평가단계**에서 반영(연속으로 4회 이내)

7.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 검증기관 지정 요건

- 검증담당 조직의 독립성 확보여부(조직), 상근 검증심사원 5명 이상 확보(인력), 운영매뉴얼·평가절차·이의처리(운영체계) 등을 갖춘 기관

□ 검증심사원 자격 요건

- 검증심사원보는 학력·경력요건을 갖추고 심사원교육을 이수한 자
- 검증심사원은 심사원보가 2년 내 5회 이상 해당분야 검증에 참여한 자
 - * 폐기물, 농축산·임업 분야는 3회 이상 참여시 해당분야 심사원 등록
- 검증기관은 소속 검증심사원이 보유한 전문분야에 한해서만 검증 수행
 - 전문분야 구분은 '13.1월부터 적용
 - * 공통분야는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5회 이상 검증 참여실적이 있는 경우 인정

□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이론, 실습 및 평가) : 80시간 이상
- 검증심사원 보수교육(매 2년) : 분야별 24시간 이상

□ 검증기관 행정처분 등 관리

- 매2년마다 검증업무 수행 적합성, 심사원 자격 유지 등 실태평가
- 검증결과 허위보고, 지정서 대여 등 준수사항 위반시 정지, 지정해지

8. 명세서의 공개 등

□ 주요 정보의 공개 범위

- 국민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중심으로 주요내용만 선별·공개
 - 일반정보(규모, 생산량 등), 사업장별 온실가스(에너지) 종류·배출량(사용량),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실적 등
- 주요내용 분석을 통한 업체간 비교정보(배출량 순위, 변화추이 등)도 제공

□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위원회는 명세서 주요정보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심사
 - 정부위원(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 등 4인) 및 민간위원(3인 이내)
 - 비공개 요청에 대한 사전검토 등 심사위원회 사무국을 센터에 설치

□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행정기관 등이 명세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화

- ◇ 중앙행정기관의 녹색성장국가전략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필요시(법 제10조제1항)
-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시(법 제11조제1항)
- ◇ 국무총리의 녹색성장국가전략 등의 점검·평가를 위하여 필요시(법 제12조제1항)
- ◇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법 제25조)
- ◇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시(법 제28조)
- ◇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시(법 제29조)

- 정보제공 요청시(사유·목적 명시) 검토 후 녹색위 심의를 거쳐 결과 통보

□ 사업보고서 공시를 위한 정보 제공

- 사업보고서 공시내용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 주요정보의 공개범위에 해당하는 정보에 한하여 명세서 정보를 센터가 제공

온실가스 · 에너지 관리업체 지정현황

1. 전체 관리업체 수

□ 목표관리 대상 관리업체의 수는 468개(대상 사업장 수는 1,564개)

관리업체 수 (A+C)	대상 사업장 수 (B+C)	업체단위 관리업체(A) 업체 내 사업장(B)	사업장단위 관리업체(C)
468	1,564	143	1,239
			325

2. 부문별 지정현황

(단위 : 개수, 천CO₂톤, TJ)

구분	관리업체 수	대상 사업장 수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농업·축산	27	5.8	68	4.3
산업	338	72.2	779	49.8
발전	34	7.3	137	8.8
폐기물	23	4.9	333	21.3
건물·교통	46	9.8	247	15.8
합 계	468	100.0	1,564	100.0
			442,127	5,586,490

* 전력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사용량)의 중복 산정량 포함

◇ (참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비교

-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42백만CO₂톤, 에너지 사용량은 5,586천TJ
- 이 중 전력 사용(scope 2)에 따른 중복 산정량(63백만톤, 1,310천TJ)을 제외하면 379백만CO₂톤(4,276천TJ)을 배출(사용)
- * 부문별로는 농·축산 0.4백만톤(5,762TJ), 산업 58.8백만톤(1,248,240TJ), 폐기물 0.8백만톤(15,596TJ), 건물·교통 2.6백만톤(40,326TJ)에 해당하는 전력 사용량 제외
- ⇒ 중복 산정량 제외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20백만톤('07년)의 61.1%, 국가 에너지 소비량 10,087천TJ('08년)의 42.4% 차지

3. 업종별 지정현황 (총 20개 업종)

□ 업체수 기준으로는 ①석유화학(16.7%), ②제지·목재(12.2%), ③철강(7.5%), ④발전·에너지(7.3%), ⑤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6.6%) 업종이 50.2%를 차지

□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는 ①발전·에너지(47.9%), ②철강(13.3%), ③석유화학(9.6%), ④시멘트(9.3%), ⑤정유(5.9%) 업종이 86.0%를 차지

* (에너지 기준) ①발전·에너지(47.5%), ②철강(16.6%), ③석유화학(10.8%), ④정유(6.5%), ⑤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4.1%) 업종이 85.5% 차지

<상위 10개 업종 현황>

관리업체 수				온실가스 배출량 (백만CO ₂ 톤)				에너지 사용량 (천TJ)			
연번	업종	업체수	%	연번	업종	온실가스	%	연번	업종	에너지	%
1	석유화학	78	16.7	1	발전에너지	212	47.9	1	발전에너지	2,651	47.5
2	제지목재	57	12.2	2	철강	59	13.3	2	철강	927	16.6
3	철강	35	7.5	3	석유화학	43	9.6	3	석유화학	605	10.8
4	발전에너지	34	7.3	4	시멘트	41	9.3	4	정유	364	6.5
5	반디	31	6.6	5	정유	26	5.9	5	반디	229	4.1
6	식품	27	5.8	6	반디	20	4.5	6	시멘트	210	3.8
6	기계	27	5.8	7	폐기물	7.6	1.7	7	제지목재	124	2.2
8	요업	26	5.6	8	제지목재	6.6	1.5	8	비철금속	67	1.2
9	병원학교등	24	5.1	9	요업	4.6	1.0	9	자동차	64	1.1
10	폐기물	23	4.9	10	운수	4.1	0.9	10	섬유	57	1.0
소계		362	77.4	소계		423	95.6	소계		5,300	94.9

* 반디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병원학교등 : 병원, 학교, 숙박, 레저시설

참고

업종별 관리업체 지정현황

관리업체 수				온실가스 배출량 (천CO ₂ 톤)				에너지 사용량 (천TJ)			
연번	업종	업체	%	연번	업종	온실가스	%	연번	업종	에너지	%
1	석유화학	78	16.7	1	발전에너지	211,719	47.9	1	발전에너지	2,651,265	47.5
2	제지목재	57	12.2	2	철강	58,807	13.3	2	철강	927,335	16.6
3	철강	35	7.5	3	석유화학	42,606	9.6	3	석유화학	605,184	10.8
4	발전에너지	34	7.3	4	시멘트	40,912	9.3	4	정유	363,562	6.5
5	반·디	31	6.6	5	정유	26,099	5.9	5	반·디	229,050	4.1
6	식품	27	5.8	6	반·디	19,857	4.5	6	시멘트	210,418	3.8
7	기계	27	5.8	7	폐기물	7,578	1.7	7	제지목재	124,474	2.2
8	요업	26	5.6	8	제지목재	6,610	1.5	8	비철금속	67,212	1.2
9	병원,학교등	24	5.1	9	요업	4,568	1.0	9	자동차	64,204	1.1
10	폐기물	23	4.9	10	운수	4,052	0.9	10	섬유	57,068	1.0
11	비철금속	19	4.1	11	비철금속	3,984	0.9	11	운수	50,386	0.9
12	자동차	19	4.1	12	섬유	3,306	0.7	12	요업	47,820	0.9
13	시멘트	17	3.6	13	자동차	3,294	0.7	13	식품	36,312	0.7
14	운수	13	2.8	14	식품	2,238	0.5	14	폐기물	33,858	0.6
15	섬유	12	2.6	15	기계	1,823	0.4	15	기계	32,846	0.6
16	유통	9	1.9	16	조선	1,712	0.4	16	조선	31,052	0.6
17	조선	8	1.7	17	유통	1,384	0.3	17	유통	27,127	0.5
18	정유	4	0.9	18	병원,학교등	961	0.2	18	병원,학교등	18,704	0.3
19	통신	3	0.6	19	통신	366	0.1	19	통신	7,072	0.1
20	광업	2	0.4	20	광업	250	0.1	20	광업	1,540	0.0
합 계		468	100	합 계		442,127	100	합 계		5,586,490	100

* 반·디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병원학교등 : 병원, 학교, 숙박, 레저시설